2025 금속노조 14기

조합·지부·지회 임원 동시선거

실무지침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금속노조 14기

조합·지부·지회 임원 동시선거

이 지침서는 금속노조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실무지침서와 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은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릅니다.

※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20조(선거관리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부칙 제2조(해석)**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2025. 9. 29.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속	직책	이름
한국지엠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차현호
경남지부(한화오션지회)	중앙선거관리위원	한종현
광주전남지부(현대삼호중공업지회)	중앙선거관리위원	박준안
울산지부(덕양산업지회)	중앙선거관리위원	백승현
기아자동차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	방극환
현대자동차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	정희원
현대중공업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	박문수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 실무 지원 ▐

소속	직책	이름
조합	총무실장	강지현
조합	총무국장	안민지

지침서 목차

14기 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 일정 개요 ····· 6
14기 동시선거 개요 ····· 7
14기 동시선거 조합·지부·지회 선거일 ····· 8
14기 동시선거 공고일 ····· 9
지부·지회(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0
14기 동시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 11
14기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 13
14기 동시선거 투표방법 ····· 16
일정별로 보는 선거실무업무_선거일 전(前)까지 _ 선거운동관리 외 ····· 18
후보자 선거운동 관리 ····· 27
현장투표의 개표관리 업무 ····· 37
당선인의 결정 ····· 39

14기 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 일정 개요

날짜	내용
9.16.(화)	조합 중앙위, 동시선거 일정 확정
9.17.(수)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보충 시작
	각급 단위, 각급 선거 투표일 결정 시작
	각급 단위, 투표 방법 결정 시작
10.10.(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보충 완료**
10.18.(토)	**금속노조 총회소집 및 임원선거 공고**
10.20.(월)	선거인명부 취합 시작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후보 등록 개시
10.21.(화)	**조합 중집, 각급 단위 투표일 예외 승인**
	조합 중집, 각급 단위 투표 방법 예외 승인
10.26.(일)	**신규 조합원 및 조합비 체납 조합원 조합비 납부 마감일(14시까지)**
10.27.(월)	**선거인명부 취합 및 등록 마감일**
10.28.(화)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후보 등록 마감일(14시까지)**
	선거 일정 알림 대 조합원 문자 발송
	선거인명부 명부 열람 시작
	선거인명부 명부 이의제기 및 정정 시작
10.29.(수)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후보자 확정 공고
10.30.(목)	조합-지부 임원 후보자 선거공보물 파일 제출 마감(14시까지)
11.4.(화)	조합-지부 임원 후보자 선거공보물(2차) 파일 제출 마감(14시까지)
11.10.(월)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일(17시까지) ※ 이후 어떤 수정도 불가**
11.11.(화)	각급 단위 현장 투표 선거인명부 출력 및 인쇄 등 선거 준비
~	각급 단위 현장 투표 투표함 및 투표 도구 준비 등 선거 준비
11.16.(일)	각급 단위 현장 투표 투표용지 배부 완료 및 준비 등 선거 준비
1차 투표 기간 _ 11.17.(월) ~ 11.20.(목)	
2차 투표 기간 _ 11.25.(화) ~ 11.28.(금)	

금속노조 조합원은 금속노조(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를 이에 따라 진행합니다.

14기 동시선거 개요

선출 대상

- **금속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 **금속노조** 여성할당 부위원장 1명 ▪ 비정규할당 부위원장 1명 ▪ 일반 부위원장 5명
- **금속노조** ▢▢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 **금속노조** ▢▢지부 부지부장
- **▢▢지회** 지회장 및 지회 임원

후보 등록 기간

-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2025년 10월 20일(월) 09:00 ~ 10월 28일(화) 14:00 (단, 기업지부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각 지회 지회장 및 지회 임원 (기업지부도 포함될 수 있음)**
  자체 규정 및 규칙, 또는 세칙에 의거함.

선거 운동 기간

-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2025년 10월 28일(화) 14:00 ~ 11월 16일(일) 24:00 (단, 기업지부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각 지회 지회장 및 지회 임원** (기업지부도 포함될 수 있음)
  자체 규정 및 규칙, 또는 세칙에 의거함.

14기 동시선거 조합·지부·지회 선거일

| 14기 동시선거일

○ 조합 14기 동시선거 1차 투표기간을 2025년 11월 17일(월) 06:30 ~ 11월 20일(목) 17:00로 한다.
○ 조합 14기 동시선거 2차 투표기간을 2025년 11월 25일(화) 06:30 ~ 11월 28일(금) 17:00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위 일정을 선거일로 하지 않는 지부 및 지회는, 각각의 의결 단위 결의를 전제로 조합 14기 동시선거 선거공고일 직후 10월 21일(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투표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 17시로 한다.

제69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지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투표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 17시로 한다.

부칙 제4조(기업지부 예외) 규약 부칙 14조(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거한 기업지부의 경우 각 지부 선거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조합 중앙선관위 해설 및 지침

- 동시선거란, 금속노조 임원, 금속노조 각 지역지부 임원, 금속노조 각 기업지부 임원, 금속노조 각 지역지부 산하 지회 임원 선거를 하나의 똑같은 선거인명부로 진행하는 것을 말함.
- 또한 동시선거란, 금속노조 임원, 금속노조 각 지역지부 임원, 금속노조 각 기업지부 임원, 금속노조 각 지역지부 산하 지회 임원 선거 모두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시선거 투표 기간에 맞춰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말함.
-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위 동시선거 투표 기간에 맞춰 자체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곳은 지부를 통해 조합에 공문으로 보고해 2025년 10월 21일(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까지 동시선거로 봄.

※ 3차 투표가 필요할 경우 3차 투표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중앙위 위임사항)
※ 현장 투표의 경우 해당 기간 내 하루 내지 전체 기간 모두 중에서 정할 수 있으나, 온라인 투표의 경우 무조건 해당 기간 전체(4일)가 투표일임.

14기 동시선거 공고일

| 14기 동시선거 공고일

○ 조합 14기 동시선거 공고일은 2025년 10월 18일(토)로 한다.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6조(선거일 및 공고)

2.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직접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 임원은 30일 이전에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부칙 제4조(기업지부 예외) 규약 부칙 14조(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거한 기업지부의 경우 각 지부 선거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조합 중앙선관위 해설 및 지침

- 14기 동시선거 투표 개시일인 2025년 11월 17일(월) 이전 30일 규정대로 10월 18일(토)을 공고일로 함.
- 기업지부 및 지회(분회, 위원회) 선거는 해당 단위 규칙이나 선거관리 세칙에 따라 단위조직 선거관리위원회가 때에 맞춰 공고함.
- 임원 선출 총회 공고와 조합 임원 선거 공고는 조합이 발행해 지부 및 지회 각 현장 단위로 발송함. 지부 임원 선거 공고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지부가 발행 및 배포함.

지부·지회(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Ⅰ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보충

○ 조합 14기 동시선거를 관리할 지부·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0월 10일(금)까지 구성 및 보충한다.

○ 모든 지부 및 지회는 지부 및 지회 선거관리위원을 선출 또는 보충 완료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명단을 2025년 10월 13일(월)까지 통보한다.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11조(임기와 결원 보충)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재호선한다.

부칙 제4조(기업지부 예외) 규약 부칙 14조(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거한 기업지부의 경우 각 지부 선거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조합 중앙선관위 해설 및 지침

- 모든 지부 및 지회는 지부 및 지회 선거관리위원을 선출 또는 보충 완료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명단을 2025년 10월 13일(월)까지 통보함.
- 부득이한 이유로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시선거 투표 기간에 맞춰 자체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 자체 선관위 가동도 어려운 경우, 금속노조 임원 및 금속노조 각 지역지부 임원 선거 관리를 할 인원을 같은 절차로 선임하여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명단을 2025년 10월 13일(월)까지 통보함.

14기 동시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 14기 동시선거 (피)선거권자 확정일

○ 이번 조합 14기 동시선거 (피)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전날인 2025년 10월 17일(금) 현재 조합에 가입된 이로 한다. 단, 권리 제한자는 제외한다.

○ 위 날짜 이전 한 달 기간인 2025년 9월 18일(목) ~ 10월 17일(금) 신규 가입자와 조합비(산별기금 납부 및 기금반환 의무 이행 포함) 체납(2개월 이상) 조합원 모두 10월 26일(일) 14시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금속노조 규약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기금운영 규정 31조, 32조, 46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③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 제한된 경우.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14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 등록 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 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선거권 제한)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가 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 전 30일 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조합 임원이 연임(2회)한 뒤, 연속해서 조합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지부 감사위원의 지속적 연임에 한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되 지부 규정에 따른다. (아래 2항 생략)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 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 (아래 6항 생략).
7. 임원은(조합, 지부, 지회)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에서 결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차기 임원선거(조합, 지부, 지회)에 한한다.
8. 임기 중 소속사업장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은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정년 후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합 중앙선관위 해설 및 지침

- 금속노조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함. 단,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납부 유예가 승인된 경우는 제외함. 미납 조합비 납부 마감 시한은 금속노조 조합비 통장 납부 기준 2025년 10월 26일(일) 14시로 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조합비가 미납된 조합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 미납 조합비란, 일반 조합비 외에도 산별기금, 신분보장·장기투쟁대책 기금 반환 의무 이행 모두를 포함함.
- 금속노조 징계로 인한 제명자 및 정권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모두 없음. 단, 금속노조 징계 중 정권자의 경우 그 기간이 2025년 10월 25일(토)(미납 조합비 납부 마감 시한 전날)인 경우 선거권이 있으며, 그 기간이 10월 17일(금)까지(선거공고일 전날)인 경우 피선거권까지 있음.
- 금속노조 선거공고일인 2025년 10월 18일(토)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해당일인 10월 18일(토) 가입 조합원도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음. 9월 18일(목) ~ 10월 17일(금) 사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1회의 조합비(산별기금 포함)를 내면 선거권·피선거권을 모두 부여하며 그 납부 마감 시한도 10월 26일(일) 14시까지로 함.
- 금속노조 (피)선거권자와 각 지부 및 지회 (피)선거권자는 정확히 동일함.

14기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 14기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 각 지부는 모든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거인명부를 취합해 선거공고일인 2025년 10월 18일(토)부터 조합·지부 임원 후보 등록 마감일 전날인 10월 27일(월)까지 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선거인명부 이의제기 시한은 2025년 11월 10일(월) 17시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전까지로 한다.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17조(선거인명부 작성)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의제기 시한을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조합 중앙선관위 해설 및 지침

1) 조합원 명단 작성 제출

- 각 지부는 모든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조합원 명부를 조합이 공지한 양식(엑셀)에 따라 2025년 10월 13일(월)부터 취합 시작함. 이후 10월 20일(월)부터 10월 27일(월)까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직접 등록해야 함. 이는 구체적으로, 지부 담당자가 지회(분회, 위원회) 조합원명부를 별도 양식(공문으로 안내) 엑셀로 취합하여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임.
- 본 조합원 명부 등록 이후 2025년 11월 10일(월) 17시 명부 최종 확정 시까지 수정·정정이 계속 이뤄지므로 본 조합원명부 등록 때는 현 조합원 전체 명단 그대로 제출하면 됨.
-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로그인할 수 있는 지부 담당자만이 이후에도 해당 조직 명부의 등록·수정·추가·삭제가 가능함. 이 아이디를 부여받은 이는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공식 통보되며, 이들은 시스템 접속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침. 복수의 지부 담당자에게 아이디 부여가 가능하나, 각 지부 담당자는 명부 등록 및 관리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조합원 명부 작성 양식(엑셀)은 아래와 같음.

연번	기수	지부코드	지회코드	분회코드	이름	전화번호	투표방법	동명이인구분	기타

① 연번 : 1, 2, 3 … 번호를 기재할 경우 작성한 대로 연번 부여됨. 공란 제출도 가능함. 단, 공란 시 연번 자동 부여됨.
② 기수 : 14로 일괄 기재 요망.
③ 지부코드 : 각 지부 코드(Code) 두(2) 자리 숫자 기재. (별도 공문으로 안내).
④ 지회코드 : 각 지회 코드(Code) 두(2) 자리 숫자 기재. (별도 공문으로 안내).
** 현대차지부는 위원회(1공장위원회…, 판매위원회 등)가 여기에 포함.
⑤ 분회코드 : 없을 경우 99로 일괄 기재 요망. 있을 경우 각 분회 코드(Code) 두(2) 자리 숫자 기재. (별도 공문으로 안내).
** 각 지역지회 산하 분회 또는 현장위원회가 여기에 포함.
** 동일 지회 내 선거구 구분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음.
⑥ 이름 : 조합원 이름을 입력하되, 성(姓)과 이름 사이 띄어쓰기는 불필요. 입력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 삭제함.
⑥ 전화번호 : 010-1234-5678 방식 또는 01012345678 등 중간에 하이픈(-) 기재 유무 무관.
⑦ 투표방법 : 현장투표는 0으로 기재, 모바일투표는 1로 기재, ARS투표는 2으로 기재, 우편투표는 3으로 기재
⑧ 동명이인구분 : 공란으로 둬도 됨. 동명이인(a, b/1, 2) 구분 등 적시 가능. 필요시 다른 정보 기입 가능.
⑨ 기타 : 공란으로 둬도 됨. 필요시 '부서', '사번' 등 적시 가능.

- 조합원 명부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원칙으로 함. 단, 현장투표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미등재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함. 13기 동시선거 당시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등록은 약 10만 명에 달했음. 선거 홍보와 공식 정보 전달을 위해 현장투표를 진행하더라도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방침으로 함. 노조 선거를 위한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취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조법 모두 검토된 사항임. 단, 누구든 휴대전화번호 외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취합하지 않음.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목록은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조차 열람 불가하게 암호화 저장 시스템 구축돼 있음. 지부 담당자의 경우, 명부 등록을 위해 사전 취합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엑셀 파일을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하면 안 됨.
-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 전자시스템 사용 매뉴얼로 별도 안내함.

2) 금속노조 조합원에 1회 문자 발송

- 금속노조 조합원 전체에, 각 지부가 등록 완료한 금속노조 조합원 명부의 휴대전화번호로 금속노조가 카카오톡채널 **"금속노조선거"**로 모바일 메시지를 2025년 10월 28일(화)에 전송할 예정임. 모바일 메시지를 받은 조합원은 **<금속노조 ○○지부 ○○지회(소속) ○○○조합원은 금속노조·지부·지회 동시선거의 선거인입니다. 최종 선거인 확정은 11월 10일입니다(예시)>**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조합원에게 선거인명부를 기초 열람케 하는 보조 수단이기도 함. 단 이는, 조합원명부 제출 시 휴대전화번호 기재자에 한함.

3) 조합원(선거인) 명부 보정

-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선거인명부 보정이 시작됨. 이 보정도, 금속노조 소속 지부 담당자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정정하는 방식임(별도 안내). 이때, 각 지부 담당자는 11월 7일(금)까지 해당 명부를 수정할 수 있음.
- 2025년 11월 8일(토)부터 11월 10일(월)까지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명부를 직접 수정함.
- 2025년 11월 10일(월) 17시부터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인명부 수정이 불가함.

4) 명부 보정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 모든 지부 및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조합원에게 선거인명부 열람을 보장해야 하며 열람 시간은 9시~18시를 원칙으로 함.

- 이 열람을 위해 금속노조 소속 지부 담당자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각 해당 지부 선거인명부를 엑셀(Excel) 또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아 지회 이하 단위에 파일로 배부함을 기본으로 함(단, 이 파일에는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는 없으며 서명란도 없음). 이 방식 외에도 각 지회 이하 단위는 지부에 직접 제출한 선거인명부 엑셀(Excel) 파일로 각 단위 명부 열람을 할 수도 있음.
- 각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는 각 지부로부터 배부받거나 각기 마련한 파일을 인쇄하여 조합사무실 등에 비치하거나,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하여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단, 이때 열람되는 선거인명부는 실제 현장투표 시 사용되는 명부가 아니므로 열람이 끝나면 폐기함.

5)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등

- 각 지부 선관위는 명부 이의제기가 정당할 시 지부 담당자를 통해 명부를 재차 수정해 11월 7일(금)까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수정 등재함. 11월 8일(토)부터 11월 10일(월)까지는 금속노조 중앙선거관위가 직접 명부를 수정함.
- 조합원 탈퇴, 제명, 징계로 선거권이 이미 상실되었으나 이를 인지한 게 2025년 11월 10일(월) 17시가 지난 후인 경우 명부 수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제 현장투표 시 해당자가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함(이는 별도 안내). 만약 무자격자가 투표한 경우 그 투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유효로 간주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해당 단위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함. 재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관위가 주관해야 함.

14기 동시선거 투표방법

| 14기 동시선거 투표방법

○ 이번 조합 14기 동시선거 투표를 온라인 또는 우편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부 및 지회 각각의 의결 단위 결의를 전제로 선고공고일 직후 10월 21일(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단, 우편투표는 구속자와 현장투표 부재자 중 온라인 투표 불가능자에 한한다.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32조(투표 방법)

1.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2. 현장투표와 온라인(ARS투표, 모바일) 투표,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3. 온라인(모바일, ARS) 투표,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우편투표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조합 중앙선관위 해설 및 지침

1) 현장투표

: 각 지회가 공지한 일시·장소에 조합원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서명 뒤 투표용지에 기표.

-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금속노조 지회 각 선거는 본 현장투표로 통일적으로 동시 진행함이 원칙임.
- 금속노조(지부 동시) 및 지회(기업지부 포함) 선거의 현장투표는 각 지부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을 통해 내려받은 피디에프(PDF) 파일로 배부한 명부를 각기 출력해 선거를 진행함. 단, 각 지회 이하 단위가 지부에 직접 제출한 선거인명부 엑셀(Excel) 파일로 각 단위 선거인명부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음.
- 금속노조(지부 동시) 및 지회(기업지부 포함) 선거의 현장투표는 지회(기업지부 포함)가 자체 마련한 투표함으로 선거를 진행함. 단, 투표함의 자체 마련이 어려운 곳에 대해 조합이 별도 지원 예정임.
- 금속노조(지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는 지부가 배부한 투표용지로, 지회(기업지부 포함) 선거의 현장투표는 각기 마련한 투표용지로 선거를 진행함.

2) 온라인투표-모바일투표

: 금속노조가 보낸 모바일 메시지 속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기표. 단, 투표 기간 4일간 매일 모바일 메시지를 발송함(투표 완료자는 다음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자동으로 제외).

-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금속노조 지회 각 선거는 현장 투표로 통일적으로 진행함이 원칙이므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2025년 10월 21일(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야 함. 단, 모바일 투표 진행 시 금속노조 동시선거 취지에 맞게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금속노조 지회 모두 통일적인 모바일 투표를 하려는 경우만 허용하며, 모바일 투표기간은 무조건 4일간으로 통일됨.
- 각 지회(기업지부 포함), 금속노조(지부 동시) 등 두 종류 선거를 같은 4일간 모두 모바일 투표로 진행하려 할 경우, 모바일 투표 문항이 금속노조(지부 동시)→각 지회(기업지부 포함) 등 순으로 구성됨.

3) 온라인투표-ARS투표

: 금속노조의 안내전화를 받아 그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및 기표. 단,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금속노조 투표 기간인 4일간 매일 안내 전화를 함(투표 완료자는 다음 안내전화 시 자동으로 제외).

- 그 외 위 모바일 투표와 동일함.

4) 우편투표

: 금속노조 각 지부가 사전에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우편회송.

-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금속노조 지회 각 선거는 본 현장투표로 통일적으로 진행함이 원칙이므로 우편투표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2025년 10월 21일(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야 함. 우편투표는 ▵구속자 ▵현장투표 기간에 부재자인 이 중 온라인 투표마저 불가능한 이 등 두(2) 경우에 한함.
- 금속노조(지부 동시) 선거의 우편투표 용지 발송은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받아 금속노조 각 지부 선관위가 실시함.

일정별로 보는 선거실무업무

선거일 전(前)까지_ 선거운동관리 외

9.17(수) ~ 10.10(금) · 각 지부·지회 선관위 구성 및 보충

- 모든 지부 및 지회는 **10월 10일(금)까지** 지부 및 지회 선거관리위원을 구성 및 보충 완료해 지부를 통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명단을 10월 13일(월)까지 통보함.

9.17(수) ~ 10.20(월) · 각 지부·지회 투표일 및 투표방법 결정

- 각 지회는 자체 의결을 통해 투표일과 투표방법을 적시하고 지부가 이를 모두 취합함. 이 취합 시한은 **10월 20일(월) 각 지부 운영위 전까지**임.
- 위 취합 내용 중 각 지회 자체 투표일이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시선거 투표 기간과 다른 곳을 모아 지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지부 공문으로 조합에 보고해야 함. 이는 2025년 10월 21일(화)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사항임.
- 또, 위 취합 내용 중 각 지회 투표방법이 현장투표가 아닌 곳을 모아 지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지부 공문으로 조합에 보고해야 함. 이도 2025년 10월 21일(화)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사항임.
  * 현장투표의 경우 해당 기간 중 하루 내지 전체 기간 모두 중에서 정할 수 있음.
  * 온라인투표의 경우 무조건 해당 기간 전체(4일)가 투표일임.
-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시선거 투표 기간과 다르고 현장투표도 아닌 경우의 자체 선거 온라인 투표는 각 해당 단위가 직접 온라인투표 담당 업체와 협의해 진행해야 하며, 그 온라인 투표 비용 역시 그 단위 자부담임.

10.13(월) ~ 10.27(월) · 조합원명부 작성과 등록

- 각 지회(분회·위원회)는 아래 양식(엑셀)대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해 지부에 제출함.

연번	기수	지부코드	지회코드	분회코드	이름	전화번호	투표방법	동명이인구분	기타

- 금속노조 소속 각 지부 담당자(별도 지정)는 10월 13일(월)부터 명부 취합을 시작함. 이후 각 지부 담당자(별도 지정)는 취합한 지회(분회·위원회 포함) 조합원 명부를 10월 20일(월)부터 10월 27일(월)까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등록함. **(명부의 등록 및 수정 방법은 지부 담당자에 별도 매뉴얼로 안내)**
- 본 조합원 명부 등록 이후, 11월 10일(월) 명부 최종 확정 시까지 수정·정정이 수시로 이뤄지므로 본 조합원 명부 등록 시에는 현 조합원 전체 명단만 그대로 등록하면 됨.
- 조합원명부 제출(등록) 시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원칙으로 함.
  * 노조 선거를 위한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취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조법 모두 검토된 사항임. 단, 누구든 휴대전화번호 외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취합하지 않음.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목록은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조차 목록 열람 불가하게 시스템화돼 있음.
- 모든 지부는 **10월 27일(월) 18시까지** 명부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이날까지 명부 등록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대외적으로 확정 선거인 수를 공표함.

10.18(토) ·금속노조 선거일정 공고 및 현장 안내

- 조합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공고와 조합 임원 선거 공고를 각각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제작해 미리 **10월 13일(월) 주에 각 현장단위에 도착하도록 발송**할 예정임.
- 금속노조는 **조합 중앙 선거 공고문 파일**도 각 지부에 파일 배포할 예정임. 각 지부는 본 공고문 파일을 각 지부 및 지회 소식지를 통한 공지, 공고문 파일의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도 함.
- 각 지부 선관위는 지부 임원 선거 공고를 지부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제작해 위에 맞춰 현장 단위에 부착되거나 공고문 파일의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함.
  * 단위조직 선거는 해당 단위 규칙이나 선거관리 세칙에 따라 단위조직 선거관리위원회가 때에 맞춰 공고하면 됨.

10.20(월) ~ 10.27(월) ·모바일 메시지 발송 사전 안내

- **10월 20일(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각 지부에, 10월 28일(화)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에게 모바일 메시지가 발송된다는 사전 안내문을 파일로 배포함. 각 지부는 이를 즉시 지회에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함. 지회는 각 게시판 부착,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함.

10.28(화) ·모바일 메시지 발송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금속노조 조합원 전체에 **모바일 메시지를 10월 28일(화) 발송**함. 금속노조가 발송

하는 **"금속노조선거"**(알림톡 채널)의 메시지를 받은 조합원은 **<금속노조 ○○지부 ○○지회(소속) ○○○조합원은 금속노조·지부·지회 동시선거의 선거인입니다. 최종 선거인 확정은 11월 10일입니다(예시)>**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됨. 이는 조합원에게 선거인명부를 기초 열람케 하는 보조 수단이기도 함. 단, 조합원명부 제출 시 휴대전화번호 기재자에 한함.

10.28(화) · 금속노조 후보자 등록 마감 조치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해야 함. 각 부위원장(부지부장)은 개별로 단독 출마해야 함.
- 조합·지부 임원 후보자 등록 마감은 **10월 28일(화) 14시**임. 이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등록신청서 1통** (선거관리 각종 서식 별도 안내).
  - **조합활동 경력소개 1통 : 입후보자 등록공고문에 넣을 경력 사항을 짧게 3줄 이내로 제출.**
  - **위 등록 서류 외에도 금속노조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진과 약력, 슬로건, 공약을 아래 양식대로 제작 또는 작성해 USB 메모리에 저장해 제출**(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명기).

  1) **사진** : 명함판 규격(가로:세로=5:7)에 jpg 파일로 제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과 부위원장 후보 모두 개인 증명사진(인물사진)을 제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는 개인 증명사진과 별도로 3명이 함께 찍은 가로 형식의 사진 파일도 제출함.
  2) **약력** : 10줄 이내
  3) **슬로건** : 메인 슬로건 1개
  4) **공약** : A4 용지 1장 이내

- 후보자의 등록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제출자는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라도 후보자를 대리할 만한 조합원은 누구라도 가능함. 단, 직접 와서 제출해야 함(팩스, 이메일 등 불가).
-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마감 후 **14시 30분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지부 등록자는 각 지부 선관위)와의 합동회의**에서 추첨으로 정하며, 이 추첨은 후보 당사자가 아닌 대리자도 가능함. 추첨 방식은 선관위가 정함.
- 지부 선관위는 지부 임원 후보자 등록 서류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함(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용).

10.28(화) ~ 11.7(금) · 권리제한 목록 취합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조합과 지부로부터 **11월 7일(금) 18시까지** 아래 목록을 취합함. (취합 방법은 조합이 별도 공지 예정)
  - **9월 18일(목)~10월 17일(금) 사이 신규 가입한 조합원 목록 및 지회 목록.**
  -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조합원 목록 및 지회 목록.**
  - **산별기금 미납 및 신분보장·장기투쟁대책 기금 반환의무 불이행 조합원 목록 및 지회 목록.**
  - **징계에 따른 제명 또는 권리제한 조합원 목록.**
  - **조합 의무교육 미이수 조합·지부·지회 임원 목록.**

10.28(화) ~ 11.10(월) ·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제기·수정

- 모든 지부 및 지회(분회·위원회 포함)는 2025년 10월 28일(화)부터 조합원에게 선거인명부 열람을 보장해야 하며 열람 시간은 9시~18시를 원칙으로 함.
- 이 열람을 위해 금속노조 소속 지부 담당자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각 해당 지부 선거인명부를 엑셀(Excel) 또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아 지회 이하 단위에 파일로 배부함을 기본으로 함(단, 이 파일에는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는 없으며 서명란도 없음). 이 방식 외에도 각 지회 이하 단위는 지부에 직접 제출한 선거인명부 엑셀(Excel) 파일로 각 단위 명부 열람을 할 수도 있음.
- 각 지회(분회·위원회 포함)는 각 지부로부터 배부받거나 각기 마련한 파일을 인쇄하여 조합사무실 등에 비치하거나,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하여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단, 이때 열람되는 선거인명부는 실제 현장투표 시 사용되는 명부가 아니므로 열람이 끝나면 폐기함.
- 각 지부 선관위는 명부 이의제기가 정당할 시 지부 담당자를 통해 명부를 재차 수정해 11월 7일(금)까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수정 등재함. 11월 8일(토)부터 11월 10일(월)까지는 금속노조 중앙선거관위가 직접 명부를 수정함.
- 조합원 탈퇴, 제명, 징계로 선거권이 이미 상실되었으나 이를 인지한 게 2025년 11월 10일(월) 17시가 지난 후인 경우 명부 수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제 현장투표 시 해당자가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함(이는 별도 안내). 만약 무자격자가 투표한 경우 그 투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유효로 간주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해당 단위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함. 재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관위가 주관해야 함.

10.28(화) ~ 11.10(월) · 선거인명부 보정 및 선거인명부 확정

- 10월 28일(화)부터 **선거인명부 보정**이 시작됨. 이는 **지부 담당자**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정정하는 방식임(별도 안내). 이때, 조합비 체납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신규조합원이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10월 27일(월)까지 제출(등재)한 명부에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명단의 변동이 발생한 지부는 명부를 수정해야 함.
  각 지부는, 위 보정기간 전체 동안 명부 누락 및 오기에 대해서도 수정 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전자투표 조합원 조치 모두 하면 됨.
- 단,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은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는 **지부 담당자에 10월 28일(화)부터 11월 7일(금) 18시까지만 모든 수정·정정·변경 권한을 전면 개방**함. 따라서 지부 차원의 선거인명부 보정은 11월 7일(금)까지 완료돼야 함.
- **11월 8일(토)부터 11월 10일(월)까지는 조합 중앙선관위가 직접 보정함.** 이때 조합은, 지부 차원에서 보정한 조합원 명부 중 권리제한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직접 삭제할 예정임. 금속노조 선거권자와 각 지부 및 지회 선거권자와도 정확히 동일함.
- 모든 선거인명부 보정은 **11월 10일(월) 17시에** 완료함. 이로써 선거인명부는 확정됨.

10.29(수) ~ 11.3(월) ·금속노조 후보자 확정공고 현장 안내 등

- 금속노조 중앙(지부)선관위는 입후보등록 사항에 대해 등록 마감 다음날인 **10월 29일(수)** 후보자 확정 공고를 냄. 이를 위해 금속노조 중앙(지부)선관위는 그 **공고문 파일**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지회는 이를 내려받아 **현장에 출력해 (임시)** 부착해야 함.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즉시 입후보 등록 **벽보형 공고를 제작해(지부 공고는 지부 선관위원장 명의) 각 지부 및 지회에 발송**할 예정임. 각 동시선거 지부도 지부 입후보 등록 벽보형 공고에 들어갈 내용을 즉시 조합에 송고하여 조합에서 동시 인쇄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함. 조합은 인쇄된 벽보형 공고들을 최대한 신속히 소속 지회에 배포하며, 지회는 임시로 출력·부착한 공고를 정식 공고로 교체해야 함. **인쇄된 벽보형 공고들의 지회 도착 시작일은 11월 3일(월)**로 예상됨.
- 금속노조 중앙 및 지부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동반출마한 후보 중 일부의 결원(유고)이 발생하여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함. 여기서 '지체 없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이 발생한 즉시로 해석함.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관리 규정 제23조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함.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각 지부에 해당 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공고 첨부)을 발송하고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선관위 게시판)와 노조 홈페이지(공지 사항 및 공문철)에 게시함. 지부 선관위 역시 같은 날 중앙선관위 공문을 지부 홈페이지(공지 사항)에 게시함.
-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함.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돼 중앙(지부)선관위로부터 시정 혹은 보완 명령이 있었음에도 명령 24시간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는 경우(이때 선관위는 시정 혹은 보완 명령을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3일 이내에 시행해야 함).
  ·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해 유인물을 통한 공식 사과(주의) 또는, 해당 단위 선관위의 직접 조합원 공개(경고) 뒤에도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해 중앙(지부)선관위가 자격상실을 의결한 경우.
  · 동반 출마한 후보 중 일부가 사퇴(사망 포함) 등으로 결원(유고)이 발생한 경우.

10.30(목) ~ 11.11(화) ·금속노조 후보자 선거공보 현장 안내 및 배포

- 공고형 선거공보란 포스터를, 자료형 선거공보란 정책자료집을 뜻함.
- 공보물 자료 제출 마감은 아래와 같음.
  · **포스터 : 10월 30일(목) 14시.**
  · **정책자료집 : 1차는 10월 30일(목) 14시, 2차는 11월 4일(화) 14시.**
  ※ 단, 지부 임원선거 정책자료집 발간 횟수는 지부 선관위(또는 선관위-후보 합동회의)에서 정하도록 함.
- 포스터에 게재할 내용은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등임.
- 공보물 자료 제출 **양식 및 규격은 10월 28일(화) 14:30 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 시 안내**함.
  ※ 지부 임원선거 공보물 형식은 중앙선관위가 관장하고 지부 선관위가 안내함.
  ※ 지부 선관위는 지부 임원 후보 공보물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함. (중앙선관위 관장하에 공보물 통합 인쇄).

- 조합 임원 선거와 지부 임원 선거에 대한 공보 모두 중앙선관위가 인쇄 및 발송을 관장함. **포스터 및 1차 정책자료집은 11월 4일(화)까지 지부에 도착**할 예정임. **2차 정책자료집은 11월 11일(화)까지 지부에 도착**할 예정임. 지부는 이 모두를 즉시 지회에 배포해야 함.

10.31(금) ~ 11.7(금) · 금속노조 현장투표 용지 제작 및 지부에 배부

- **금속노조 및 금속노조 지부 임원 선거의 모든 투표용지**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서 서식에 의거해 **일괄 인쇄해 지부로 발송**함.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은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으로 함.
- 투표용지 색상과 규격은 관례에 따라 아래를 기준으로 하되, 중앙선관위 논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음.
  - **위-수-사 : 노랑 / 여성할당 부위원장 : 빨강 / 비정규할당 부위원장 : 파랑 / 일반 부위원장 : 연두**
  - **지-수-사 : 보라 / 부지부장 : 회색 / 지회장 : 흰색**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11월 3일(월) 일괄 투표용지 제작 및 인쇄**에 돌입할 예정임.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인쇄하여 발송한 투표용지는 각 **지부에 11월 7일(금)까지 도착**할 예정임. 지부는 이를 지회(분회·위원회 포함)에 배부함.

11.7(금) ~ 11.16(일) · 현장투표 준비① 투표함 준비

- **각 지회 선관위**가 자체 마련한 투표함으로 선거를 준비함.

  단,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마련이 여의치 않은 곳에 한해, 10/27(월)까지 신청을 받아 통일된 1회용 종이 투표함을 제작해 지부를 통해 별도 지원도 부분적으로 병행할 예정임. * 2차 투표까지 고려해 신청 요망.

11.7(금) ~ 11.16(일) · 현장투표 준비② 투표용지 준비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인쇄하여 지부에 11월 7일(금)까지 배부한 투표용지로만 사용함.
- 각 지회 선거 투표용지는 자체 마련한 투표용지로 준비함.

11.10(월) ~ 11.16(일) · 현장투표 준비③ 선거인명부 준비

- 이 기간 동안, 지부 담당자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각 해당 지부 선거인명부를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아 지회 이하 단위에 파일로 배부함을 기본으로 함. (이 파일에는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는 없으나 서명란은 있음)
- 지부 담당자가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서 내려받아 지회에 교부할 피디에프(PDF)의 선거인명부는 아래(실제 양식은 변경 예정)와 같은 방식임을 참고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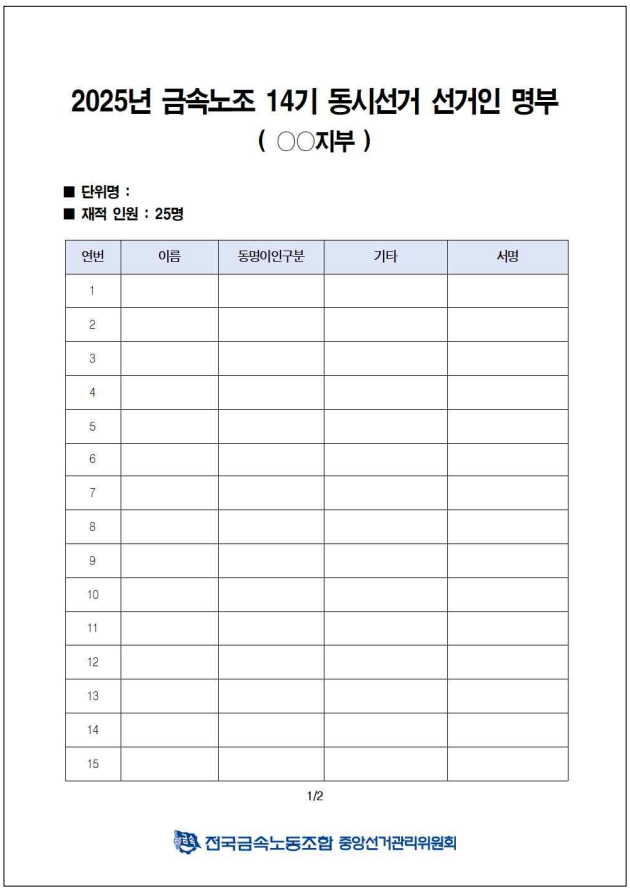

2025년 금속노조 14기 동시선거 선거인 명부

(○○지부)

■ 단위명 :

■ 재적 인원 : 25명

연번	이름	동명이인구분	기타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2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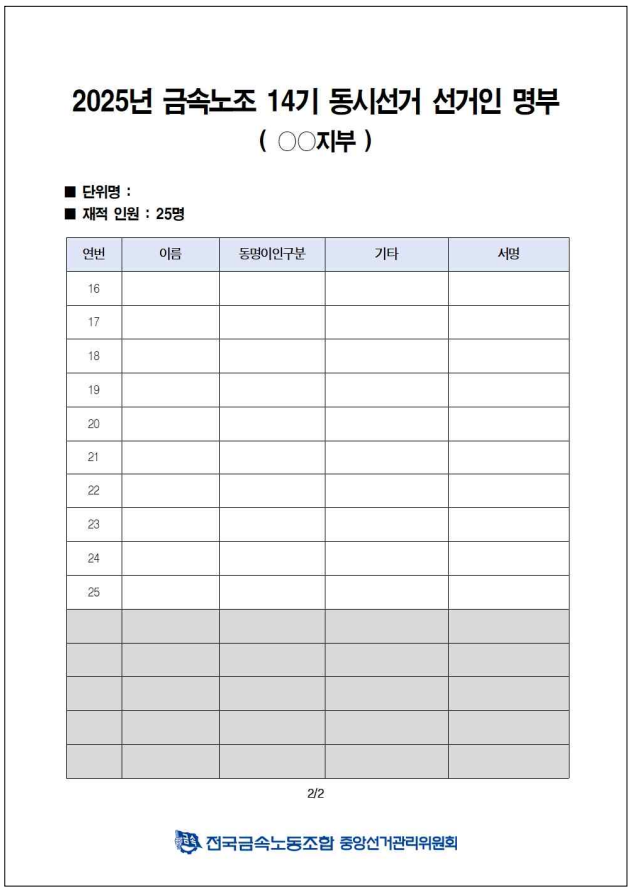

2025년 금속노조 14기 동시선거 선거인 명부

(○○지부)

■ 단위명 :

■ 재적 인원 : 25명

연번	이름	동명이인구분	기타	서명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2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 선거인명부는 11/10(월)에 확정된 명단에 의거하며 조합 탈퇴 및 징계 등에 따른 명단 삭제 외에는 누구도 임의로 추가 기재(임의로 등재) 등의 수정을 할 수 없음. 조합 탈퇴, 징계 등을 이유로 명부에서 삭제할 경우 색깔 있는 펜으로 줄을 긋고 반드시 금속노조 지부를 통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로 보고해야 함.
  - 선거인명부에 혹시 빠진 조합원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추가할 수 없으며 이번 선거 재적에 포함되지 아니함. 선거인명부에 임의로 누군가를 기재(임의등재)할 경우 해당 단위가 '일부 재투표' 대상이 되어 한 번 더 현장 투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절대 임의로 기재(임의등재)를 하지 않아야 함.

- 이 방식 외에도 각 지회 이하 단위는 지부에 직접 제출한 선거인명부 엑셀(Excel) 파일로 선거인명부로 활용할 수도 있음.

11.10(월) ~ 11.16(일) ·온라인 투표 준비

각 지회가 별도 준비할 실무 조치는 없음. 단, 아래 사항만 사전에 조합원에게 안내해두면 됨. ※ 지회 선거를 모바일 투표로 하려는 곳은 입후보자 정보 등을 투표일 2주 전에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제공해야 모바일투표 시스템 구축이 됨(해당 시기 별도 안내).

대(對) 조합원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간

- 전체 4일 동안 1일 1회 08시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지부별 사전 요청으로 지부별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의결로, 필요시 하루 2~3회 모바일 메시지 발송도 가능합니다.

모바일투표 전(前) 본인인증

-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조합원마다 각기 모두 다른 URL(인터넷주소)이 발송됩니다.
- 단, 전체 선거일 4일 동안 보내지는 각 선거인별 URL(인터넷주소)은 동일합니다.
- 모바일 메시지를 수신받은 선거인이 모바일 메시지 내용 속 URL(인터넷주소)에 접속한 뒤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4자리 숫자 인증번호가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 모바일 메시지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본인인증 페이지의 인증번호칸에 입력하면 투표창이 열립니다.

모바일투표 유효시간

- 기본적으로 모바일 메시지 수신 시부터 투표 종료 시점까지 어느 때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위 본인인증이 끝난 뒤에는 30분 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30분 내 투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인인증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단, 투표 종료시간 이전에 본인인증을 마친 선거인에 한해 종료시간이 지나더라도 30분의 투표 시간을 보장합니다.

모바일투표 도중 중단하였을 경우

-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를 시작했으나 투표 도중 모든 투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창을 닫고 나갈 경우, 본인인증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다시 본인인증을 거치면 기존에 진행 중이던 투표에 이어서 재개됩니다.
- 투표중단 후 투표 종료일까지 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투표 중단 전 완료한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되나 완료하지 않은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선택하지 않음' 기표 가능

- 각 선거 문항에는 '선택하지 않음'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

2025 금속노조 14기

조합·지부·지회 임원 동시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관리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마감 시간부터 투표일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본 지침서에는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 및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개요)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사항은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지침에 따릅니다.

1 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 마감은 10월 28일(화) 14시임.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은 다음과 같음 (모두 조합 선관위 홈페이지 _ vote.kmwu.kr _ 에 서식·양식 게시)

① 등록신청서 1통

14기 금속노조 임원선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위원장 후보
소속 :
이름 :
생년월일 :
연락처 :

2) 수석부위원장 후보
소속 :
이름 :
생년월일 :
연락처 :

3) 사무처장 후보
소속 :
이름 :
생년월일 :
연락처 :

위 사람들은 2025년 11월 17일 실시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원 선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자로 등록합니다.

※ 선대본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귀중

14기 금속노조 임원선거
부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부위원장 후보
소속 :
이름 :
생년월일 :
소수자 할당 여부(해당란에 ✓) : □ 일반 □ 여성할당 □ 비정규할당
연락처 :

위 사람은 2025년 11월 17일 실시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원 선거 부위원장 후보자로 등록합니다.

※ 선대본 담당자 이름 : 연락처 :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귀중

② 노동조합 활동 경력소개서 1통

노동조합 활동 경력 소개서

이름	㉯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이메일	

※ 노동조합 활동 경력 사항은 아래 10줄 이내로 작성함. 경력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됨.
※ 업후보 등록 공고(출력물)에는 3줄 이내의 경력 사항만 기재함. 공고용 경력을 최대 세 개까지만 체크(✓)함.

시기	경력	공고용 (✓)

③ USB 메모리

USB 메모리에 아래 파일을 담아 제출함.

- 사진 jpg 파일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3명이 함께 찍은 사진 규격(가로:세로=7:5)
  위원장 후보 개별 사진 규격(가로:세로=5:7)

수석부위원장 후보 개별 사진 규격(가로:세로=5:7)
사무처장 후보 개별 사진 규격(가로:세로=5:7)
부위원장 후보 개별 사진 규격(가로:세로=5:7)

- 약력 hwp 파일 : 10줄 이내 (11줄로 넘어가면 11줄부터 강제 삭제함)
- 슬로건 hwp 파일 : 메인 슬로건 1개
- 공약 hwp 파일 : A4 용지 1장 이내 (2장이 넘어가면 2장부터 강제 삭제함)
- 각 후보자 또는 후보조 실무연락 창구 담당자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hwp 파일

※ 위 hwp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해도 됨.

○ 위 서류 제출자는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라도 후보자를 대리할 만한 조합원은 누구라도 가능함. 단, 직접 와서 제출해야 함.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사무실 : 서울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6층 (02-2670-9516)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원 부재 시 후보자등록 접수 실무를 조합 총무실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안민지 총무국장, 010-6228-0074)

○ 후보자 등록 완료 시 선관위는 후보자에게 후보자 등록 필증을 교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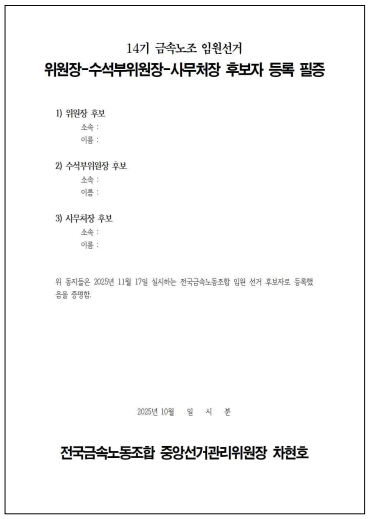

14기 금속노조 임원선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자 등록 필증

1) 위원장 후보
소속 :
이름 :

2) 수석부위원장 후보
소속 :
이름 :

3) 사무처장 후보
소속 :
이름 :

위 등지들은 2025년 11월 17일 실시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음을 증명함.

2025년 10월 일 시 분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차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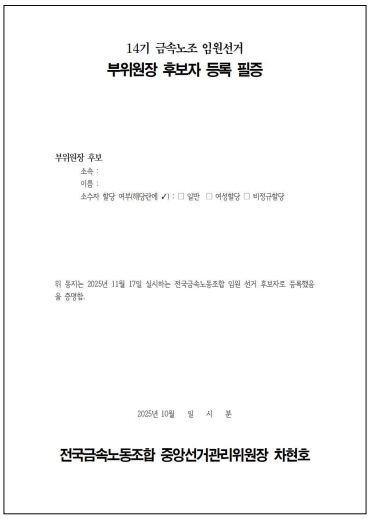

14기 금속노조 임원선거
부위원장 후보자 등록 필증

부위원장 후보
소속 :
이름 :
소수자 할당 여부(해당란에 ✓) : □ 일반 □ 여성할당 □ 비정규할당

위 등지는 2025년 11월 17일 실시하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음을 증명함.

2025년 10월 일 시 분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차현호

※ 지부도 위 기준을 준용함.

2 후보자 기호 추첨

○ 10월 28일(화) 후보자등록 마감(14시) 이후 14시 30분에 선관위 주관으로 후보자들 모두 모여**(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추첨해 기호를 부여함.

※ 지부도 같은 시간 진행함.

3 선거운동 기간

○ 후보자 기호 부여와 동시에 각 후보자(또는 후보조)의 선거운동은 개시됨.

○ 선거운동 종료일은 투표일(11/17 ~) 전날인 11월 16일(일) 자정까지임. 공휴일에도 선거운동은 가능함.

4 후보자 또는 후보조의 선거운동원

○ 조합 중앙 임원 후보자 또는 후보조 당사자를 제외한 선거운동원은
- 지부 및 지회를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는 전국 선거운동원
- 지회를 넘나들 수 없는 지회 선거운동원

등 두 종류로 구성할 수 있음.

○ 전국 선거운동원은
- 위-수-사의 경우 30명을 넘을 수 없으며
- 부위원장의 경우 10명을 넘을 수 없음.

※ 전국 선거운동원은 별도 명단 제출 없이, 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10/28, 14:30) 시 선관위가 후보자 또는 후보조에 배부한 선거운동원증(각각 30개 또는 10개)을 활용한 후보자 또는 후보조의 자율 운영으로 갈음함. 선거운동원증의 추가 교부는 없음.

○ 지회 선거운동원은
- 모든 후보자 또는 후보조 당 지회 별 10명을 넘을 수 없음.
- 여기서 지회란, 현대차지부의 경우 소속 위원회 단위를 포함함.

※ 지회 선거운동원도 별도 명단 제출 없이, 조합 선관위 홈페이지(vote.kmwu.kr)에 게재된 지회 선거운동원 패찰 양식을 각기 다운로드-출력하여 사용하면 됨. 단, 하나의 지회(또는 위원회)에 10명이 넘는(11명 이상) 지회 선거운동원 패찰 패용자가 발견되어 신고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됨.

○ 모든 전국 또는 지회 선거운동원은 규정상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의 활동을 할 수 있음. 임원 후보를 포함한 선거운동원은 동일한 어깨띠와 단체복(조끼 포함) 등을 착용할 수 있음.

○ 각급 단위 선출직(직간선 모두 포함) 임원이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다 이것이 적발되어 신고될 경우 '위반'으로 처리됨.

※ 지부 임원 후보자 또는 후보조 선거운동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부 선관위가 정함.

5 후보자 또는 후보조의 현장방문 선거운동

○ 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10/28, 14:30) 시 조합 선관위는, 이날까지 취합된 지부·지회 선관위원 명단이 담긴 목록 출력본을 후보자에게 교부할 예정임.

○ 후보자 또는 후보조의 개별 현장 방문은 허용됨. 대신, 사전에 위 지부·지회 선관위 또는 해당 단위 집행간부와의 일정 협의를 통하도록 함. 그리고 각 지부·지회 선관위 또는 해당 단위 집행간부는 후보자 또는 후보조의 현장방문 선거운동에 최대한 협조해야 함. 각 지부·지회 선관위 또는 해당 단위 집행간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의 방문만 협조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후보자 및 후보조 현장 방문 순회에 동행(안내)하는 각급 단위 집행 간부 등의 협조를 선거운동으로 보지는 않음.

6 선거공보물

○ 후보자 및 후보조의 선거공보물이란 공고형 공보(포스터)와 자료형 공보(정책자료집) 등 두(2) 종료임.

○ 포스터 편집 파일 제출 마감은 10월 30일(목) 14시며, 아래와 같이 제출함.

① 위-수-사 후보조

- 색상 : 칼라
- 내용 : 입후보한 후보 조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필수
- 규격 : (후보조 수에 따라 추후 마련)
  단, 포스터 일부가 잘릴 수 있음을 감안해 상하좌우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작 요망.
- 파일 : PDF파일
- 제출처 : kmwuelec@gmail.com

② 부위원장 후보

- 색상 : 칼라
- 내용 : 입후보한 후보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필수
- 규격 : (후보자 수에 따라 추후 마련)
  단, 포스터 일부가 잘릴 수 있음을 감안해 상하좌우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작 요망.
- 파일 : PDF파일
- 제출처 : kmwuelec@gmail.com

③ 지-수-사 후보조

- 색상 : 칼라
- 내용 : 입후보한 후보 조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필수
- 규격 : (후보조 수에 따라 추후 마련)
  단, 포스터 일부가 잘릴 수 있음을 감안해 상하좌우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작 요망.
- 파일 : PDF파일
- 제출처 : 지부 선관위가 정한 제출처

④ 부지부장 후보

- 색상 : 칼라
- 내용 : 입후보한 후보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필수
- 규격 : (후보자 수에 따라 추후 마련)
  단, 포스터 일부가 잘릴 수 있음을 감안해 상하좌우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작 요망.
- 파일 : PDF파일
- 제출처 : 지부 선관위가 정한 제출처

○ 정책자료집 편집 파일 제출 마감은 10월 30일(목) 14시(1차), 11월 4일(화) 14시(2차)임.

① 위-수-사 후보조

- 색상 : 칼라
- 내용 : 입후보한 후보 조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등
- 규격 : A4 (210mm*297mm) 4페이지, 단, 짝수 쪽부터 시작함을 염두에 둠.
- 파일 : PDF파일
- 제출처 : kmwuelec@gmail.com

② 부위원장 후보

- 색상 : 칼라
- 내용 : 입후보한 후보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등
- 규격 : A4 (210mm*297mm) 2페이지, 단, 짝수 쪽부터 시작함을 염두에 둠.
- 파일 : PDF파일
- 제출처 : kmwuelec@gmail.com

③ 지-수-사 후보조

- 색상 : 칼라
- 내용 : 입후보한 후보 조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등
- 규격 : A4 (210mm*297mm) 4페이지, 단, 짝수 쪽부터 시작함을 염두에 둠.
- 파일 : PDF파일
- 제출처 : 지부 선관위가 정한 제출처

④ 부지부장 후보

- 색상 : 칼라
- 내용 : 입후보한 후보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등
- 규격 : A4 (210mm*297mm) 2페이지, 단, 짝수 쪽부터 시작함을 염두에 둠.
- 파일 : PDF파일
- 제출처 : 지부 선관위가 정한 제출처

○ 조합 중앙 임원의 위-수-사 후보조 및 부위원장 후보 선거공보물은 조합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인쇄하여 공고형 공보-현장 단위, 자료형 공보-지부로 배부함. 지부 임원의 지-수-사 후보조 및 부지부장 후보 선거공보물도 조합 중앙선관위가 관장하여 인쇄 및 공고형 공보-현장 단위, 자료형 공보(조합·지부 합본)-지부로 배부함.

7 후보 유세동영상 촬영 및 전파

○ 조합 위수사 후보조 및 부위원장 후보에 대해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유세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촬영함.

① 위-수-사 후보조

- 각 후보조 당 전체 분량 : 6분
- 형식 : 각 후보조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② 부위원장 후보

- 각 후보 당 전체 분량 : 3분
- 형식 : 각 후보가 자율적으로 정함.

③ 촬영일 및 장소

- 위수사 후보조 : 10월 30일(목) 14시 30분,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부위원장 후보 : 10월 30일(목) 15시 00분,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위 촬영본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함.

※ 지부 임원 선거는 지부 선관위가 자체 판단함.

8 위수사 후보조 정책토론회

○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조에 한해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아래(단, 아래는 예시임. 변경될 수 있음)와 같이 1회 실시함.

- 일시 : 2025년 11월 3일(월)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참석 : 후보조 당 위원장 후보 필참, 그 외 1명 추가 필참 = 전체 2명
- 진행 : 중앙선관위원장 인사말, 순서 개요 및 주의사항 안내
  기호순으로 위원장 후보 기조 발언(3분) *3분 초과 시 마이크 자동 소거

  기호 역순으로 상대 후보조에 질의(1분) *1분 초과 시 마이크 자동 소거
  질의에 대한 답변(2분) *2분 초과 시 마이크 자동 소거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1분) *1분 초과 시 마이크 자동 소거
  추가 질의에 대한 재답변(1분) *1분 초과 시 마이크 자동 소거 **× 4회**

  기호 역순으로 후보조 대표 동지(자율적으로 정함) 마무리 발언(2분) *2분 초과 시 마이크 자동 소거

○ 위 정책토론회는 실시간 중계하며 촬영본은 조합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함.

○ 위 정책토론회 외에, 선관위가 주관하지 않는 각종 온·오프라인 토론회·좌담회·인터뷰 등은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돼야 함. 선관위는 해당 기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각 후보자와 협의해 공정성을 해치

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대한 허용함. 단, 각 후보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안된 토론회·좌담회·인터뷰 등의 진행이 합의되지 않을 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

※ 지부 임원 선거는 지부 선관위가 자체 판단함.

9 후보조 또는 후보자의 개인홍보 선거운동

※ 아래를 기본 원칙으로 함. 단, 10월 30일(목) 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에서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위수사 또는 부위원장 등 모든 입후보자의 개인 홍보 선거운동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일함. 아래 모든 개인 홍보 비용은 각 후보자(또는 후보조)가 부담함.

① 명함

- 종류와 색도, 부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단, QR코드 삽입은 하지 않음.
-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인쇄 전 시안을 반드시 선관위 검인 받아야 함.

② 종이 인쇄 유인물

- 종류, 사이즈, 색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QR코드 삽입은 하지 않음.
- 1차 선거운동 기간 중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각급 단위 선출직(직간선 모두) 임원의 지지 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인쇄 전 시안을 반드시 선관위 검인 받아야 함.

③ 동영상

- 재생 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함.
- 1차 선거운동 기간 중 횟수를 1회로 제한함.
- 각급 단위 선출직(직간선 모두) 임원의 지지의 말이나 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시안을 반드시 선관위 사전검인 받아야 함.

④ 피켓

- 사이즈 및 색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QR코드 삽입은 하지 않음.
- 개수는 전국 선거운동원 수(위수사30, 부위원장10)를 넘을 수 없음.
  이때 이 개수란, 피켓 종류가 30(또는 10)개가 넘을 수 없으며, 실제 몇 개를 제작했는지와 무관하게 하나의 선거운동 현장에 30(또는 10)개가 넘는 피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풀이함.
-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제작 전 시안을 반드시 선관위 검인 받아야 함.

⑤ 현수막

- 사이즈 및 색도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QR코드 삽입은 하지 않음.
- 개수는 전국 선거운동원 수의 절반(위수사15, 부위원장5)를 넘을 수 없음.
  이때 이 개수란, 현수막 종류가 15(또는 5)개가 넘을 수 없으며, 실제 몇 개를 제작했는지와 무관하게 하나의 선거운동 현장에 15(또는 5)개가 넘는 현수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풀이함.
-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이동식으로만 허용하며, 상시 게시할 수 없음.
-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제작 전 시안을 반드시 선관위 검인 받아야 함.

⑥ 게시형 SNS 계정 운영

- 후보자 또는 후보조의 게시형 SNS 계정 운영을 허용함. 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등을 말함.
- 각급 단위 선출직(직간선 모두) 임원의 지지의 말이나 글이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위 외에 별도의 선대본 홈페이지 등의 개설은 금지함.
- 본 게시형 SNS 계정 운영 자체를 사전에 선관위 검인받을 필요는 없음.

⑦ SNS 배포 게시물

- 카드뉴스, 웹자보를 비롯한 게시형 SNS 계정 게시물 등등을 말함. 이때 후보자 또는 후보조의 게시형 SNS 계정을 통한 짧은 동영상 삽입, QR코드 삽입 등은 하지 않음.
- 위 모든 SNS 배포 게시물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음.
- 각급 단위 선출직(직간선 모두) 임원의 지지의 말이나 글은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게시물의 배포 및 게시 전 반드시 선관위 검인 받아야 함.
- 본 SNS 게시물은 검인을 위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과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⑧ 단체 문자 메시지 발송

- 후보조 또는 후보자의 단체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함.
  이때 단체 문자란, 문자 말머리에 [Web발신]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말함.

⑨ 선거운동원 착용 단체복, 조끼, 어깨띠

- 개인 홍보물로 보지 않아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규약·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적시된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 의결로 제재할 수 있음.
- 후보 또는 후보조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각 후보 또는 후보조는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 위 개인 홍보 선거운동 전 선관위 사전 검인 절차

- 중앙선관위가 위임한 실무자(조합 총무실 안민지 총무국장, 010-6228-0074)에 각 후보자 또는 후보조 실무연락 창구 담당자가 해당 개인 홍보물을 텔레그램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선관위 사전 검인 신청으로 갈음함. 단, 사전 검인 신청 가능일에 토·일·휴일은 제외되며, 평일의 경우 오후 5시까지로 함.
- 중앙선관위가 위임한 실무자가 선관위 검인 절차를 진행함.
- 중앙선관위가 위임한 실무자가 1시간 내 중앙선관위의 이의 사항을 따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인 완료로 갈음함. 토·일·휴일 또는 평일 오후 5시 이후 검인 신청 사항의 경우 다음날 평일 오전 10시를

검인 완료 1시간 내로 풀이함.

- 입후보자가 검인을 득한 홍보물을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 게시판에 등록해야 이것이 조합원들의 해당 홍보물 선관위 검인 여부 확인으로 갈음됨. 선관위는 각 후보조 및 후보자에게 각종 홍보물을 검인 후 게시를 위한 계정(아이디/비번)을 부여할 예정임.

10 그 외 선거운동 금지사항

○ **선거관리 규정 제24(61)조 2항, 제26(63)조 2·3항, 제28(65)조, 제31(68)조에서 금지한 사항을 준수함.**

○ **현직 각급 선출직(직간선 모두 포함) 임원의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금지함.**
단, 현직 각급 선출직(직간선 모두 포함) 임원을 제외한 조합원 누구라도 트위터, 페이스북(페이지 포함),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텔레그램 단체방, 각종 SNS의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한 모든 의사 표현은 가능하며 선관위가 공지한 공보물 중 특정 후보 부분만 발췌해 개인적으로 같은 의사 표현을 한 경우도 가능함.

○ **후보자 또는 후보조, 그리고 선거운동원이 앰프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조합원을 향해 선동선전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됨.**
단, 각급 조직의 공식 행사(회의, 집회로 한함)에 참여해 조직 공식 프로그램으로 후보자에 발언권이 주어졌을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때 타 후보자가 같이 참여한 경우라면 공평하게 발언권을 줘야 함.

현장투표의 개표관리 업무

※ 모바일 또는 ARS 투표의 개표 시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의 업무는 없음.

※ 본 개요를 포함한 세부 개표 관리 안내서는 별도 발행 예정임.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 지부 임원 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관리 규정 제75조 ~ 제77조 참고.

제40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 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41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42조(투표 결과 보고)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8호)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현장투표 개표관리

○ 개표는 지부별로 모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부 선관위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음.

○ 입후보자가 추천한 1인의 개표참관인은 각 지부 선관위에 신고 후 각 개표소(지부)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음.

○ 개표참관인은 지부마다 각 후보 진영 당 1명으로 제한함.

○ 각 지회 선거의 경우는 지회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함.

현장투표함의 개함

○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함 선포 없이 투표함을 개함할 수 없음.

○ 개표는 투표종료 시간 후 해당 지부 산하 지회 중 3분의 2 이상의 투표함이 도착했을 때 시작 할 수 있음.

○ 지부 선관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확인해야 함.

○ 후보자별 득표수는 지회 단위로 구분해 집계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아래 득표수를 검열해야 함.

○ 각 지회 선거의 경우는 지회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함.

현장투표의 무효투표

○ 선거관리 규정이 정하지 않은 무효투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결정 단위는 해당 지부 선관위로 하며 해당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선관위가 결정함. 이때 **아래 기준을 우선 준용할 계획**임.

○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 때문에 아래의 경우는 유효로 봄. 아래 예시 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함.

*** 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호란, 후보자 성명란에도 기표한 것**
***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은 것이지만 식별할 수 있는 것**
*** 투표용지 일부가 찢어졌거나, 찢어져 소실됐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후보자 모두의 기표란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구분선상에 기표됐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 (기호란, 성명란, 기표란을 모두 포함함)**
*** 투표인이 기표란에 볼펜 등으로 ○표 하였다가 착오를 발견하고 그 위에 겹쳐 기표용구로 기표한 것**
*** 투표인이 지지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는 필기구로 문자를 기재한 경우**

○ 아래 예시의 경우는 확실히 무효표로 봄. 아래 예시 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함.

***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테두리선에 맞물려 기표하여 어느 후보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 투표소에서 안내·제공된 투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경우**

○ 각 지회 선거의 경우는 지회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함.

현장투표의 결과 보고

○ 지회별 후보자 득표 현황을 정리하되, 유인물, 대자보, 신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음.

○ 지부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 결과를 조합 선거관리 전자시스템(kmwu.net)에 입력함.

○ 각 지회 선거의 경우는 지회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함.

당선인의 결정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 지부 임원 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관리 규정 제78조·제79조·제80조·제83조 참고.

제43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민주노총 직접선거와 조합 동시선거를 동일 시기 진행할 경우 재투표 실시 기간에 예외를 둘 수 있다.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 선거는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선출정원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선출정원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 한다.
4. 부위원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를 한다.
5.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6.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서식 제9호)

제44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③ 제43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④ 제48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5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선거무효
   ② 당선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31조 2

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 단수를 선출하는 위-수-사와 소수자 할당 부위원장 선거는 투표율이 50%를 넘고, 투표자 수 대비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인이 결정됨.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함.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을 묻는 3차 투표를 실시함. 후보자가 3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를 실시함. 재선거 시에는 선거관리 규정 제43조 5항에 따라 동반 출마자가 재등록할 수 없음.

○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선출정원을 초과하면 다득표순으로 선출정원만큼만 당선인이 결정됨. 과반 득표자가 선출정원 미만인 경우 과반 득표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미만을 득표한 후보 중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서만 2차 찬반투표를 실시함. 2차 찬반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는 당선인이 되며, 과반 미만 득표를 한 후보는 최종 낙선 처리됨.

○ 선거관리 규정 제45조에 따라 조합 임원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선거무효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효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재투표를 명해 당선인을 결정해야 함.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재투표 없이 무효로 처리함.

○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관위는 서면으로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며, 투표 결과와 함께 당선인 결정 공고를 시행함.

○ 투개표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이의신청 접수 7일 이내에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 처분 등을 결정해야 함. 선거무효는 문제가 발생한 해당 단위에 한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 규정 제45조에 따름. 전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하면 재선거를 실시함. 선거무효, 당선무효 처분은 당선인 결정 공고 이후라도 시행할 수 있음.

○ 이의 신청 기간(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선거관리 규정 제31조 2항(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5항(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당선 이후에도 선관위 의결로 당선무효 처리할 수 있음.

부록 : 금속노조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 임원, 각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회 대의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의 각급 감사위원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지부 임원, 지회 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회 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각급 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단, 지회 임원 및 지회 대의원의 경우 각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직접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 임원은 30일 이전에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② **삭제**
   ③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
   ③ 참관인 신청 등록
   ④ 투·개표의 관리
   ⑤ 선거운동 관리
   ⑥ 선거공보의 발행
   ⑦ 선거홍보물의 등록
   ⑧ 합동연설회의 개최
   ⑨ 선거록 작성 보고
   ⑩ 당선인 확정 통보
   ⑪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인 경우 투표 기간은 투표개시일 오전 06시 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 마지막 날 17시까지로 한다.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5일 내로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 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 선출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재호선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재호선한다.
7. **삭제**

제12조(활동보장)

1. **삭제**
2. 중앙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된 지부, 지회는 임원 동시선거 기간동안 (선거 공고일~3차 투표 마감 다음날) 중앙 선거관리위원의 임시상근을 보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 등록 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지부, 지회 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시 조합경력소개 서류에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간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을 포함하여야 하고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형 선거공보물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인명부

제14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 등록 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 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선거권 제한)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가 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 전 30일 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조합 임원이 연임(2회)한 뒤, 지부 임원이 재연임(3회)한 뒤 연속해서 해당 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지부 감사위원의 지속적 연임에 한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되 지부 규정에 따른다.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 단위의 차기 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 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
6. 조합원은 동일 기수 조합・지부・지회 임원선거(재선거・보궐 선거・보충선거 포함)에 중복하여 출마할 수 없다.
7. 임원은(조합, 지부, 지회)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에서 결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차기 임원선거(조합, 지부, 지회)에 한한다.
8. 임기 중 소속사업장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은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정년 후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작성)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의제기 시한을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선거관리 규정 해석

제19조(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0조(선거관리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 장 조합 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21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입후보(러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 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제22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제23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이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31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공개방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4조(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공고형 및 자료형 공보 편집완성 파일을 후보등록 마감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6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 관련 홍보물은 제작·배포할 수 없다.

제27조(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2.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개인 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9조(입후보자 방문 선거운동)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

제30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선거 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공영제 원칙은 직접 선출 지부 임원, 지회 임원 선거에도 적용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비용도 편성 시 포함한다.

제31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2조(투표 방법)

1.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2. 현장투표와 온라인(ARS투표, 모바일) 투표,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3.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우편투표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

어 실시한다.

제33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 각 지부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투표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 17시로 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서식 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배분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배분한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2%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일련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 제7호)

제3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 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 도구로 기표한다.

제39조(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1.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대상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기로 걸려 온 전화 또는 문자를 받아, 투표 안내에 따라 투표한다.
2.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안내의 발신, 투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절 개표

제40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 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4.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의 개표, 참관 및 기타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1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42조(투표 결과 보고)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8호)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제43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민주노총 직접선거와 조합 동시선거를 동일 시기 진행할 경우 재투표 실시 기간에 예외를 둘 수 있다.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 선거는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선출정원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선출정원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한다.
4. 부위원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를 한다.
5.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6.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서식 제9호)

제5절 재선거, 보궐 선거

제44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③ 제43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④ 제48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5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6조(보궐 선거)

1.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 선거의 공고 기간은 조합,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4. 보궐 선거의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47조(보충선거)

1. 조합 임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 기간은 20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8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선거무효
   ② 당선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31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49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부 임원선거

제1절 입후보

제58조(입후보자 등록)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러닝메이트], 부지부장[개별출마])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 제3-1호)에 구비서류

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 제4-1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본조, 지회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제59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5-1호)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이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임원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68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공개방식 등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경고 처분을 받은 지부 임원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61조(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지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선거공보)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공고형 및 자료형 공보 편집완성 파일을 후보등록 마감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63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 횟수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제64조(합동연설회)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2.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65조(개인 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6조(입후보자 방문 선거운동) 지부 임원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

제67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 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8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69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투표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 17시로 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71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서식 제6-1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배분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배분한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의 2%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일련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제72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 제7-1호)

제73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4조(투표 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 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75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76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77조(투표 결과 보고)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서식 제8-1호)

제78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지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지부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 2차로 찬·반 투표한다.

4.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서식 제9-1호)

제5절 재선거, 보궐 선거

제79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③ 제78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④ 제83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8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81조(보궐 선거)

1.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 선거의 공고 기간은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4.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82조(보충선거)

1. 지부 임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 기간은 15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83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선거무효
   ② 당선무효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68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84조(제재) 지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3조(경과조치) 비전임 부지부장에 한해 지회장의 지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단, 3기에 한한다.)

제4조(기업지부 예외)

규약 부칙 14조(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거한 기업지부의 경우 각 지부 선거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금속노조 14기 조합-지부-지회 동시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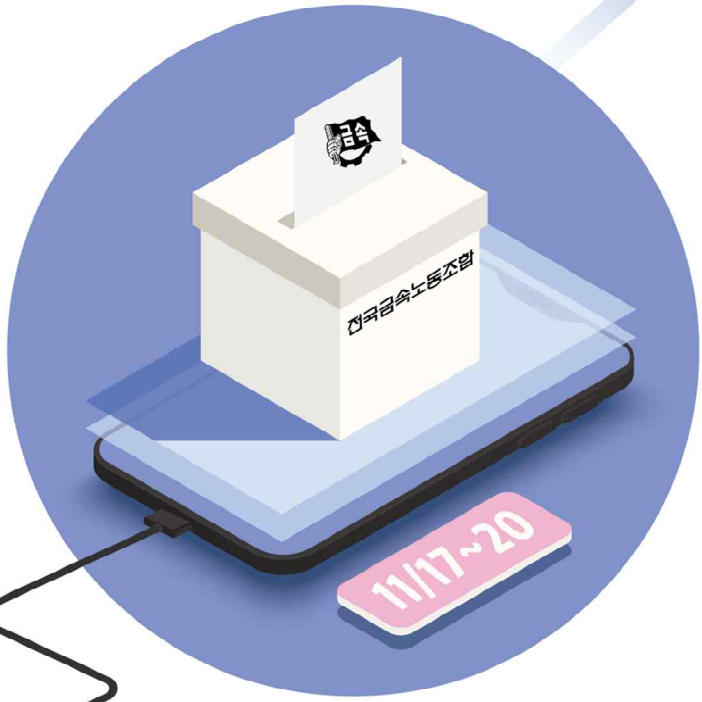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사 별관 6층

홈페이지 vote.kmwu.kr 이메일 kmwuelec@gmail.com

전화 02-2670-9516 팩스 02-2679-3714